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 46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 한준호 의원

찬 성 자:169인

제안이유

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·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,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,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, 이사 추천 권한을

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,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(안 제46조 등).

- 나.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(안 제50조제7항신설).
- 다. 한국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,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0조의2 신설 등).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2항 중 "11人"을 "2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理事는"을 "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"로, "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"를 "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(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3.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 -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
 -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
 - 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다만,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- 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의2. 제50조의2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⑦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(意思)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 - 1.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2.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3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 대한 경우
 - 4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 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50조의2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 -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
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 중 "추천"을 "임명제청"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 第46條(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	第46條(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	2
이사 <u>11人</u> 으로 구성한다.	21명
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	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
고려하여 <u>방송통신위원회에서</u>	지역성 및 사회
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.	
	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
	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
	이 임명한다.
<u><신 설></u>	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
	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
	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
	<u>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</u>
	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
	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	하여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
	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<u> </u>	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
	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
	추천하는 사람 6명(지역방송
	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
	포함한다). 이 경우 성별로

<신 설>

<u><신</u>설>

<신 설>

- ④ ~ ⑥ (생 략)
- 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. << 단서</td>신설>

- <u>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</u> 여야 한다.
- 3.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 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
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
 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
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단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<u>⑤</u> ~ <u>⑦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
- <u>8</u> -----
- -----. <u>다만, 제</u> 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

<신 설>

<신 설>

(8) · (9) (생 략)

第49條(理事會의 機能) ① 理事會 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・ 議決하다.

1. ~ 7. (생 략) <신 설>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 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 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
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 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① · ② (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)

第49條(理事會의 機能) ① 理事會 第49條(理事會의 機能) ① ------

1. ~ 7. (현행과 같음)7의2. 제50조의2의 사장후보국

8. ~ 15. (생 략)

② (생략)

第50條(執行機關) ① ~ ⑥ (생략)

<u><신</u> 설>

<u><신 설></u>

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

- 8. ~ 15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第50條(執行機關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 - ⑦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(意思) 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 - 1.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2.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3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지장을 초래한 경우
 - 4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

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

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

 경우
- 제50조의2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 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 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 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.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 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를 구성하여야 한다.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 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

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